

고등교육의 과시적 개혁보다는 구조적 정상화를

장 임 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중앙대 의학과 교수

1. 현대사회의 지식

캐 나다 퀘백 정부 대학협의회 의장의 요청을 받아 최선진 사회에서의 지식의 지위에 대한 보고서로 집필한 『포스트모던의 조건』(1979)에서, 프랑스의 철학자 리오타르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식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 왔으며,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구와 습득된 지식의 전수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지식은 정보의 양(비트)으로 번역될 경우에만 새로운 채널에 들어맞게 되며 조작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될 수 없는 지식 구성물은 모두 폐기될 것이며, 새로운 연구방향도 그 최종 결과가 컴퓨터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에 지배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습득이 정신 또는 개인의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옛 원리

는 이제 낡은 것이 되고 있으며, 지식의 외화(exteriorization)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식 공급자와 사용자가 자신들이 공급 또는 사용하는 지식과 맺는 관계는 이제 상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상품과 맺고 있는 관계의 형식을 닮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식은 팔리기 위해 생산되고, 지식은 새로운 생산에서 가치를 얻기 위해 소비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지식은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이기를 그만두고 '사용가치'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식이 주된 생산력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후기 산업사회(포스트모던 시대)에서 과학은 민족국가의 생산력 창고에서 유품가는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지위를 강화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리오타르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결론도 가능해진다. 민족국가들이 한때 영토 장악을 위해, 나중에는 원료와 값싼 노동력을

획득하고 착취하기 위해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정보를 장악하기 위해 싸우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리오타르의 추정도 UR 타결 이후 더욱 현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지나치게 단순·평면적으로 국내 대학간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한국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경제적 차원에서 국가의 국제경쟁력은 그간 과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로 전락한 교육의 정상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제고가 전인적 인격의 함양과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대학)교육의 우선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는 말앞에 마차를 가져다 놓으려는 본말이 전도된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2. 경쟁만을 부추기는 대학정책과 대학종합평가인정제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철저하게 교육을 상품화하여 시장논리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교육인력을 활용해서 현재 학원이나 과외학습으로 이뤄지는 초·중·고 사교육의 상당부분을 수요자부담원칙 아래 학교별로 방과 후 학교내 과외를 허용해서(필요하다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 비용을 흡수하려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또 초·중·고교의 기부금제도까지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는 ‘국가재정 형편에 비추어 현재 국민 총생산 대비 4.3% 수준인 교육예산을 목표선(대통령 공약사항)인 5%로 높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을 이

려한 궁여지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혁명적 확보와 대학의 자주·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조건의 수립(예를 들어서 현행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성과의 실질적 수혜자인 기업과 정부기관 등에 부과하는 ‘교육소비세’의 신설 등)에 의한 대학의 육성책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특히 사립대학)의 홀로서기만을 강조하면서 대학간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철저하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것이다. 나아가서 영세하거나, 역사가 짧거나 지방에 있는 대학의 폐교 위기는 물론이고 거대 대학의 문어발식 전국 차원의 분교운영을 가시화 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국립대의 특수법인화 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제적 수준의 교육·연구여전 조성을 위하여 국립대가 특수법인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가 교육재정 확보노력을 포기한 채 그나마 대학생의 25%에 지나지 않는 국·공립대생마저 감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96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키로 계획하였다가 94년부터 성급히 앞당겨 7년 주기로 실시키로 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 그 문제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평가신청대학이 앞장서서 자기 대학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공동연구에 의해 작성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를 토대로 실시되기 때문에 각 대학의 수준과 질, 역사, 대학구성원의 대학에 대한 인식도와 대학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그리고 또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신학대학, 개방대학 등 각각 다른 유형의 대학에 어떻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둘째로 가중치의 평가 배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발표된 평가의 항목은 학부에서 100개항

(가중치 적용 500점)과 대학원의 20개항 (가중치 적용 100점)이다. 그러나 각개의 평가항목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비중에 있어서 그 판단이 자극히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립대 이사회와 구성과 운영이 합리적인가', '강의실의 확보율이 우수한가'와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은 적절한가'가 모두 6점이지만, 이는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 교수, 운영자 및 대학의 특성에 따라 그 상대적 중요성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제시된 평가항목과 주요지표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평가의 결과(대학서열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공개행정과 대학 재정의 사회적 공개정도, 세습적이고 족벌주의적 학교운영의 탈피정도 등의 항목이 빠져있는 것도 치명적이다. 대학설치기준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대학정책이 이과, 공대, 첨단과학 방향으로 중심점이 옮겨지면서 인문·교양교육의 위축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학사회의 기능적 분업화도 개별대학의 자기 결정에 의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시행될 위험을 안고 있다.

5월 19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교육부는 현행 4년제 대학을 대학원 중심대학과 학부 중심대학으로 구분, 육성하는 것 등을柱자로 하는 '대학원 설치기준령'(가칭)을 오는 6월중 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 두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중심대학과 급역별 산업수요에 맞게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는 학부 중심대학을 구분,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각 대학에 대한 행·재정상의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법을 통해 특성화를 유

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분류되는 (이 분류에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은 대학원의 학과 신설·증설, 신규투자 등에 행·재정상의 지원을 많이 받는 대신 학부에 대한 지원은 억제 당할 것이며, 반대로 학부 중심대학은 대학원에 대한 행·재정상의 지원을 억제하는 대신 학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연구기능보다 교육기능에 역점을 두는 '교육중심대학', 산업현장과 긴밀한 연계체제를 유지하는 '기술중심대학', 여전을 갖춘 소수의 대학원 중심체제의 '연구중심대학' 등 대학의 기능분업화는 그 구체적인 현실적 실행방법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력 특성별(정예연구인력, 고등전문인력, 전문기술인력 등) 양성의 분업화 논리에 따른 이 계획은 대학교육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또 다른 형태로의 획일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특히 각 대학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대학간 협력체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3. 고등교육 정상화의 방향

국가경쟁력 강화는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된 교육의 결과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현대 대학의 위기상황에도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내에서 학문주의와 도구주의 사이의 긴장증대, 교육과 연구 사이의 갈등심화, 경험적 지식의 축적과 이론적 지식의 형성 사이의 갈등, 각 학문의 전문화에 따른 공통의 지적 언어의 상실 등 대학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고등교육의 민족성과 계급성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오늘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속에서 교육개혁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고등교육 정상화의 주요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제도적 차원에서 사립학교법 등 전근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이 시급하다. 사립학교법은 초·중등과 대학에 각각 알맞도록 분리 개정되어야 하며, 대학자치에 중점을 두어 대학구성주체(교수·학생·직원)들의 상설협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유명무실해진 교대와 사범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② 교육재정면에서 혁명적 교육재정 확보책과 국·공립, 사립의 균형지원책, 사립대학육성책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③ 교육이념차원에서 교육주체인 교수의 교권,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직원의 행정권이 확립되어

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책은 교육부의 틀 또는 교육계의 시각에 국한된 한계를 벗어나 정치·경제·문화·사회 전반의 상호관계 속에서 진보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고 그 작업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장임원/기률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대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중이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및 한국노동보건직업병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대학 보건학』등이 있다.